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6-74호

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기업명 (인증번호)	대표자명 (사업체 주소)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	처분내용	처분일자
		근거규정	처분사유		
민들레코하우징(주) (제2010-202호)	이종혁 (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82-7, 4층)	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(법제18조제1항제2호)	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기준 이하 (법제8조제1항제5호)	사회적기업 인증취소	2026. 6. 15.
주식회사라잇루트 (제2019-360호)	신민정 (서울시 중구 다산로32길 54, 4층)				

2026. 6. 15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

